

스포츠 인권헌장



스포츠 인권헌장



스포츠 인권헌장

스포츠 인권헌장 전문 _5

제1장 스포츠는 인권이다 _6

제2장 모든 사람은 스포츠와 신체 활동에 참여하고 누릴 권리가 있다 _8

제3장 스포츠는 민주 사회의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의 장이다 _12

제4장 스포츠는 세계인의 공용어이다 _16

제5장 스포츠와 신체 활동은 개인의 행복 증진에 기여한다 _20

제6장 스포츠는 다양하다 _26

제7장 스포츠의 진정한 목적 구현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 노력해야 한다 _28

스포츠 인권헌장 전문 前文

스포츠 인권헌장은

스포츠 분야의 신체·언어적 폭력, 성폭력, 학습권 침해 등 인권침해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있어 체육정책 관계자, 지도자, 운동선수 및 시민들이 알아야 할 스포츠의 참의미와 신체활동의 사회적 역할을 천명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스포츠 인권헌장은

스포츠 활동에서 누려야 하는 인권과 이를 지키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즐거움과 성취감을 주는 아름다운 스포츠는

‘인권’이라는 토양에서 뿌리내리고 자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포츠 인권’이라는 기초체력을 키우기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은 모든 인간의 인간다운 생활, 신체적 자유, 교육을 통한 행복 추구 권리를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 분야에 있어 우리의 현실은 국제 스포츠 및 인권기구가 밝히고 있는 스포츠 정신이나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포츠는 인간 한계를 뛰어넘는 자기극복 의지의 표출이자 잠재된 능력을 펼치는 자기실현의 계기이며, 타인과의 비적대적 경쟁을 통한 소통과 화합의 과정이며, 여가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등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활동이다.

이렇듯 스포츠는 인간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므로 인권 보장의 환경 속에서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고 시민의 스포츠 참여율을 높이는 것은 현대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이다.

이에 인권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 스포츠, 누구나 즐겁게 참여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스포츠, 움직임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타인과 소통하며 삶의 풍요로움을 증진시키는 진정한 스포츠의 의미를 찾아 나서고자 한다.

제1장

스포츠는 인권이다



제1조

스포츠와 신체 활동은 육체로 하는 자기표현 활동이다.

1. 스포츠와 신체 활동은 개인이 자아와 사상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2. 스포츠와 신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람들은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수준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

제2조

개인은 스포츠와 신체 활동으로 자아를 찾고 자존 의식을 높인다.

1. 스포츠와 신체 활동의 참여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신체를 인식하고 그를 바탕으로 독특한 자아를 확립한다.
2. 스포츠와 신체 활동으로 육체 능력을 배양하여 자신감과 자존 의식을 높일 수 있다.
3. 스포츠와 신체 활동을 통해 자기 몸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몸도 배려할 수 있게 된다.

제2장

모든 사람은 스포츠와 신체 활동에 참여하고 누릴 권리가 있다



제3조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스포츠와 신체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필수 권리이다.
2. 국가의 스포츠 정책은 '모든 국민을 위한 스포츠'의 실현을 추구해야 한다.
3. 국가는 모든 국민이 스포츠와 신체 활동에 참여할 최소 시간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4. 국가는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및 신체활동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5. 국가는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국민을 돕는 지도자를 공급해야 한다.

제4조

여성은 스포츠 활동에 대한 참여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1. 여성은 스포츠와 신체활동을 통해 육체적 자신감을 얻고 자존의식을 높일 수 있다.
2. 국가는 여성이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교육 관계자는 여성 청소년이 스포츠 활동에서 억압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스포츠 활동 현장에서는 여성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

제5조

학교는 학생의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대한 동기부여와 기량 습득의 책임을 가진다.

1. 학교는 학생의 발달단계에 필요한 스포츠와 신체활동을 교과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2. 학교는 다양한 신체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특정인이 독점하지 않도록 한다.
3. 스포츠 교육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학생의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제6조

국가는 장애인이 스포츠 활동 참여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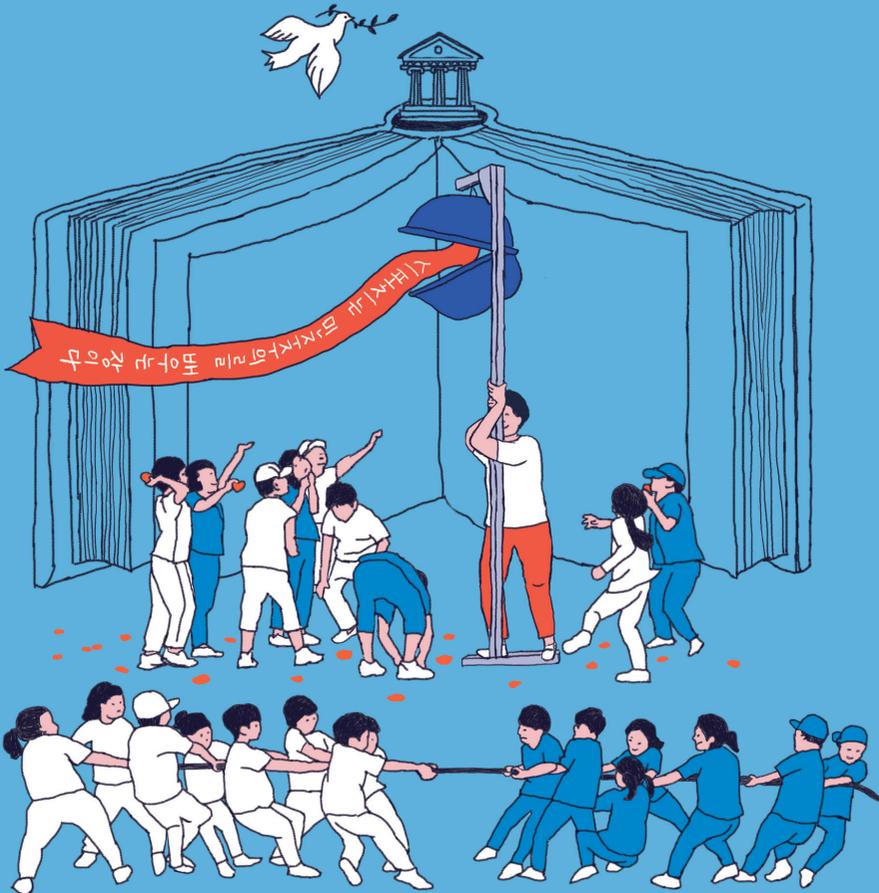
1. 장애인은 스포츠와 신체활동을 통해 육체적 자신감과 몸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다.
2. 장애인은 스포츠와 신체활동 참여를 통해 더 많은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3. 국가는 장애인이 스포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국가는 장애 종류와 욕구에 맞는 신체활동 기회를 주고, 전문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
5. 스포츠 활동 현장에서는 장애인이 자유롭게 활용할 적절한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



제3장

스포츠는

민주 사회의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의 장이다



제7조

스포츠는 교육의 장이다.

1. 스포츠를 통해 인내심과 자신감을 키우고, 협동심, 배려와 존중의 가치를 배운다.
2. 스포츠는 규칙 준수와 결과 존중의 태도를 키워 민주 시민의 기본자질을 배양한다.

제8조

성장기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스포츠의 교육적 효과는 더욱 크다.

1. 아동과 청소년 스포츠 교육의 일차적 목표는 스포츠의 잠재적 혜택을 주는 것이다.
2. 아동과 청소년 스포츠는 교육의 일환으로 그 성과 역시 교육적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3. 아동과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성과를 평가할 때 개인차를 무시한 일률적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되며, 개인의 발달 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법을 찾아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제9조

스포츠 지도자는 적합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1. 아동과 청소년 스포츠 지도자는 기량 향상만이 아닌 인성까지 지도하는 교육자이다.
2. 아동과 청소년 스포츠 지도자는 그 교육적 역할에 걸맞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 스포츠 지도자는 훈련과 지도에 필요한 리더십 자질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4. 스포츠 교사의 실적은 학생들의 신체활동 향상과 관심도 증진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타 학교와의 성적 비교나 대회 실적 등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5. 스포츠 지도자들이 안정적 환경에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6. 청소년과 여성이 스포츠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적극적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

스포츠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다.

1. 스포츠 참여는 평등한 집단 활동으로 결과를 만들어가는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다.
2. 스포츠는 연대와 협동의 중요성을 알게 한다.
3. 스포츠는 과정을 공정하게 다루고 결과에 승복하는 방법을 배우는 장이다.



제4장

스포츠는 세계인의 공용어이다



제11조

스포츠는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

1. 스포츠와 신체활동은 주위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의식을 복돋운다.
2. 스포츠와 신체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감을 높이고 사회활동에 참여한다.
3. 스포츠와 신체활동을 통한 집단 정체성은 구성원들에게 소속감을 제공한다.
4. 사회구성원들은 스포츠 교류로 정서적 공감대와 공동체 의식의 저변을 형성한다.

제12조

스포츠는 세계인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

1. 스포츠는 인종과 민족, 성, 세대의 장벽을 초월하여 세계인이 교류하는 공용어이다.
2. 스포츠 활동 참여는 이 공용어를 배워 세계인과 교류하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다.
3. 스포츠 교류는 인류에게 동질감을 주며 평화롭게 공존하도록 노력할 동기를 부여한다.

제1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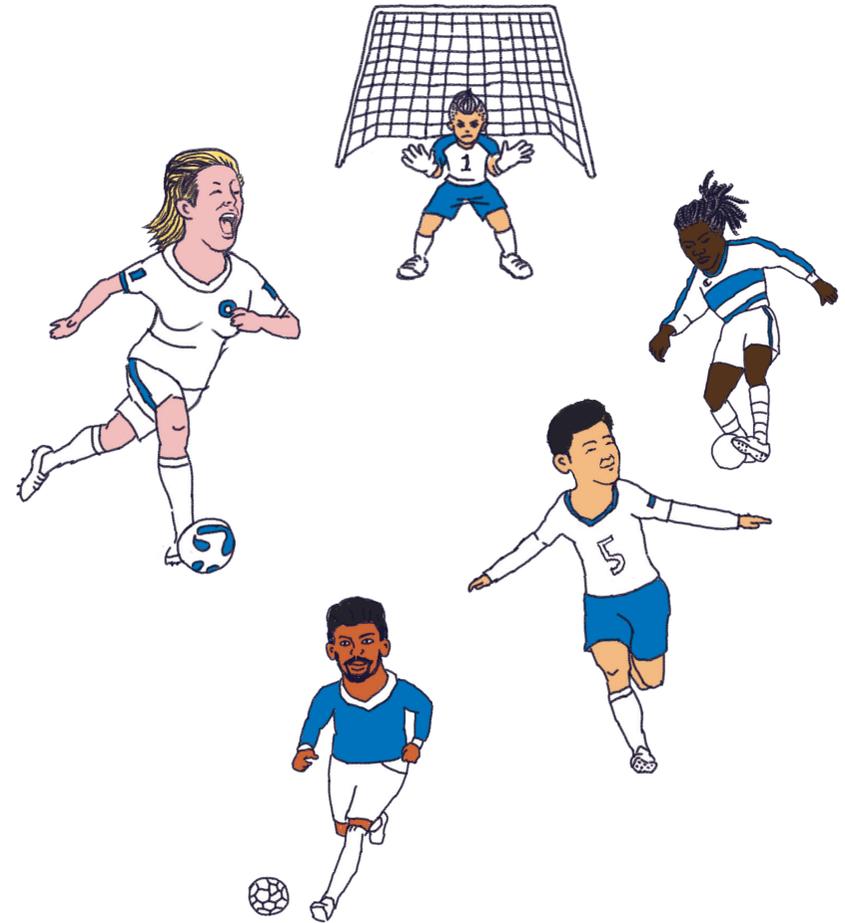
스포츠는 국제적 교류와 소통의 주요한 매개체이다.

1. 다른 국가의 시민들과 스포츠를 통한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2. 스포츠를 통한 교류가 일부 인사들에게 국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스포츠를 통한 국제 교류의 목적은 상호 이해와 우애 증진에 있다.

1. 스포츠 교류에서 지나친 경쟁이나 승부에 대한 집착은 자제해야 한다.
2. 언론의 스포츠 보도는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3. 인종, 성별 등을 차별하는 부적절한 언어 사용이나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5장

스포츠와 신체 활동은 개인의 행복 증진에 기여한다



제15조

스포츠와 신체 활동은 신체의 건강과 행복한 삶의 영위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1. 스포츠와 신체 활동은 그 자체로 즐겁고 만족스러운 활동이다.
2. 현대사회 시민들은 스포츠와 신체활동으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
3. 스포츠와 신체활동은 유쾌한 몰입을 제공하여 삶의 여유와 정신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16조

스포츠는 인간이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도와준다.

1. 모든 사람은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적절한 시간을 내어 자기 건강을 도모해야 한다.
2. 스포츠에 탁월한 자질과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를 실현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3. 청소년 학생 선수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학습권 및 인성 교육을 보장해야 한다.
4. 신체와 정신 발달과정에 맞춰 다양한 스포츠에 참여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제17조

스포츠 현장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1. 현대 시민사회의 기초인 인권, 민주주의, 법치 원리가 스포츠 영역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2. 스포츠 영역에서 발생하는 언어·신체·정서 폭력을 예방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3. 스포츠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아동, 청소년,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
4. 정부와 스포츠 조직은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체계적 노력을 해야 한다.

제18조

직업적 스포츠 활동을 하거나 계획하는 운동선수에 대한 보호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1. 훈련 시간과 경기참여 횟수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선수를 혹사시키지 않아야 한다.
2. 경기력 향상이나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약물 등 유해 물질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3. 모든 선수들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경기출전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4. 의료 지원체계를 갖추어 훈련이나 경기 중 부상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5. 아동·청소년 선수 지도자는 선수 몸 상태 이상 발견 시 즉시 의료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부상 선수가 훈련이나 경기에 참가할 때 자격을 갖춘 의료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7. 부상이나 은퇴로 선수생활을 그만두는 사람에게는 진로지도와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제19조

아동과 청소년의 스포츠나 신체 활동 참여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1. 학교는 아동과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에서 인권침해를 감시할 담당자를 배치해야 한다.
2. 인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 피해 구제 절차와 담당자의 역할을 규정해 놓아야 한다.
3. 인권 침해 피해자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원 또는 상담 통로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4. 인권 침해에 대한 피해 구제는 피해자의 2차적 피해 방지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제20조

스포츠 활동 참여자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스포츠 분야 인권 실태를 조사·연구해야 하며, 필요한 예산과 제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2. 실태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스포츠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제21조

스포츠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스포츠 참여자와 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스포츠 인권 교육을 시행하고 이를 일반 시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

1. 아동과 청소년 스포츠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2. 체육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창의적 방식으로 개선하여 질적 발전을 도모한다.

제2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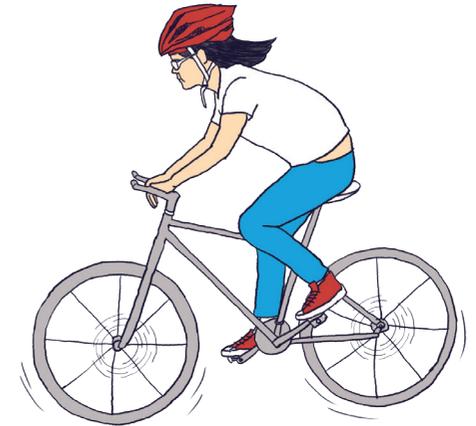
스포츠 인권 보호를 위해 정부, 교육기관, 스포츠 조직은 각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

1. 국가와 지자체, 스포츠 조직은 대중이 스포츠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2. 국가와 지자체, 스포츠 조직은 폭력을 예방하고 청소년 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3. 교육기관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제23조

스포츠 참여자들의 인권보호 의식이 정착되도록 지역사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

1. 학교 스포츠 활동에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지역사회는 아동과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3. 지역사회는 주민의 스포츠와 신체활동 참여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보호와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장

스포츠는 다양하다



제24조

모든 종류의 신체 활동은 적절한 교육적·사회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한 동등하게 배려해야 한다.

1. 각 개인의 특성이나 취향에 맞춰 다양한 신체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2. 국가, 지방 정부, 스포츠 관련 기구는 새로운 종류의 스포츠나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배려해야 한다.
3. 국가와 지방 정부는 다양한 신체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합한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제25조

스포츠와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 강제적 압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1. 모든 사람은 스포츠나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압력을 받지 않아야 한다.
2. 스포츠 종목과 팀을 선택할 때 강요받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3. 특정 스포츠에 참여 또는 비참여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제 7 장

스포츠의

진정한 목적 구현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 노력해야 한다.



제26조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스포츠 인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1. 국가는 스포츠와 신체활동이 보편적 인권 요소임을 인식하고, 그 참여율을 높이고 발생 가능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국가 차원의 스포츠 인권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스포츠 인권정책의 기본 목표는 모든 국민을 위한 스포츠와 이를 통한 행복 실현이다.
3. 국가는 스포츠 인권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27조

국가와 지방 정부는 스포츠의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관계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1. 정책과 법령은 운동선수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를 척결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2. 정책과 법령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스포츠가 신체와 정신을 균형 있게 성장시키는 교육의 중요 수단이 되도록 해야 하며 신체활동을 강요하거나 박탈하지 않아야 한다.
3. 정책과 법령은 모든 시민의 권리인 스포츠 참여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4. 기존의 법령과 제도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 정신에 부합하도록 적절히 보완해야 한다.

제28조

국가와 지방 정부는 스포츠 정책목표가 스포츠 현장에서 구현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1. 국가와 지방 정부는 스포츠 정책의 목표 달성을 검증할 구체적 틀을 갖추어야 한다.
2. 모두를 위한 스포츠라는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 전략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국가와 지방 정부는 스포츠 정책의 단계별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4. 스포츠 정책은 기술, 신체활동의 변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

제29조

스포츠 이해관계자는 스포츠 인권 증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과 소통에 힘써야 한다.

1. 스포츠 인권의 증진을 위해 정부, 교육기관, 스포츠 조직, 사회단체, 전문가 그룹, 현장 주체들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해야 한다.
2. 언론과 미디어는 인기 스포츠 스타나 경기대회 중심의 보도관행을 탈피하고 스포츠 영역의 인권 증진과 모두를 위한 스포츠 실현에 동참해야 한다.
3. 국제기구, NGO, 해외 스포츠 인권 기구, 전문가 등과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스포츠
인권헌장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 발행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 발행일 2019년 12월 27일
기획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 디자인 디자인이즈



1331

인권상담센터

www.humanrights.go.kr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0F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ISBN 978-89-6114-741-5 03330